

|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1. 인스턴트 라면 소비 감소, 가격 상승과 건강에 대한 관심도 증가 요인



- 세계 인스턴트 라면협회(WINA, World Instant Noodles Association)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네시아의 인스턴트 라면 소비(추정치)는 전년 대비 3% 감소한 126억 2,000만개였음
- 인도네시아 라면소비는 4년 연속 감소 추세이며, 인도네시아 식음료업체연합(Gapmmi)은 가격 상승과 건강에 대한 관심도 증가를 요인으로 보고 있음
- Gapmmi는 가격이 라면 가격 상승과 중산층 이상의 소비자들이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스턴트 라면 소비를 자제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히며, 제품 종류가 다양해지고 품질이 높아지면서 향후 인스턴트 라면 시장이 반등할 것으로 전망 하였음
- WINA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네시아의 인스턴트 라면 소비량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였으며 1인당 연간 소비량은 48개로 세계 6위였음

* 출처 : 자카르타경제신문/ 2018년 7월 05일

2. 인도네시아 할랄산업단지 개발 계획

- 인도네시아 부동산 개발업체 모던랜드(PT Modernland Realty)는 자회사 모던 인더스트리얼 에스테이트(PT Modern Industrial Estate)를 통해 반뜰주 세랑에 인도네시아 최초의 할랄 산업단지를 건설한다고 밝힘



▲ 할랄산업단지가 위치할 반뜰주 세랑

- 할랄 산업단지에는 할랄제품의 생산, 물류, 냉장보관 등 전 공정이 이뤄질 것이며, 종교부 산하의 할랄인증청(BPJPH)과 제휴하여 단지 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에 할랄이 부여됨
- 산업단지의 부지 면적은 총 500헥타르로 3단계로 나누어 건설됨. 1단계 공사 부지 면적은 150헥타르로 약 1년간 개발, 투자액은 5,000억 루피아에 달할 전망이다
- 모던 인더스트리얼 에스테이트에 의하면 식품업계가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산업부 국제산업안전액세스개발국은 할랄 산업단지에 관한 기준을 최대한 빨리 준비 하겠다고 밝히며 이미 할랄 산업단지를 보유한 말레이시아와 태국, 아랍에미리트연합(UAE) 기준을 참고하겠다고 설명함

* 출처 : Industri Bisnis / 2018년 6월 1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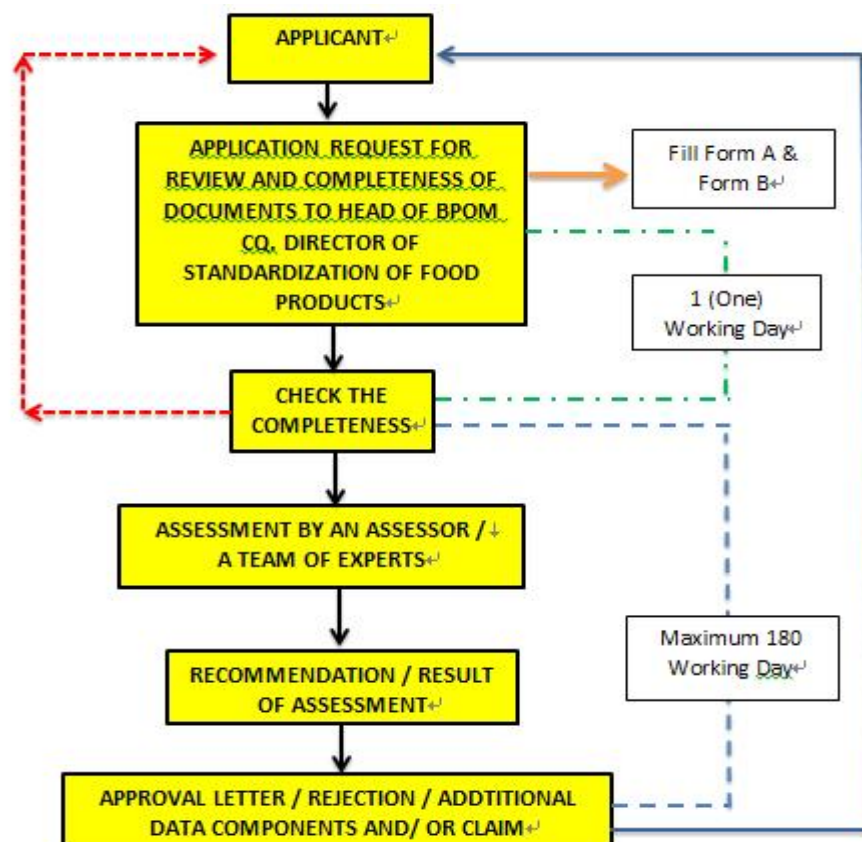
1. 인도네시아 수입 식품의 잔여 유통기한 규정

-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 규정 2017년 30호(PERATURAN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NOMOR 30 TAHUN 2017)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제품 유형별 수입 제품의 잔여 유통 기한을 설정 관리 하고 있음
- 건강보조식품, 전통의약품, 화장품 잔여 유통기한 주의 사항
 - 제품의 잔여 유통기한이 최소 1/3 이상 남아 있는 제품에 대하여 수입이 가능
- 유산균 제품
 - 유산균의 제품은 잔여 유통기한이 최소 9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수입이 가능
- 일반 가공 식품과 의약품
 - 해당 제품의 잔여 유통 기한이 2/3 이상 남아 있어야 수입이 가능

2. 전문 식품 등록 제도

- 전문식품 적용 대상
 - 기능성 표시 문구가 필요한 제품(다이어트 등)
 - 파우더 제품(신규 시행)
 - 유산균 함유 제품
 - 식품 재료에는 사용 가능하나 최대 허용치를 초과 사용한 특정 성분 포함 제품
- 해당 전문 식품은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BPOM) 온라인 ML(수입식품등록) 접수 신청 이전에 식약청 본청에 별도 접수처에 접수를 하여야 함
- ML(수입식품등록) 접수 신청 이전에 해당 제품의 모든 성분 및 영양 정보 등의 요구 서류를 준비 하여 사전 평가를 받아야 함
- Form A, B 양식을 작성 제출 하고 접수 처리 이후 최대 180일내에 다음과 같이 심사 평가 결과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 하여 줌
 - Surat Persetujuan(전문 식품 승인서) / Penolakan(반려-거절) / Tambahan data komponen pangan(추가 기술 서류 요청)

- 전문 식품 승인서 발급이 최종 ML(수입식품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것은 아니며 전문 식품류로 승인을 받았기에 이를 수령 후 ML 등록 절차를 진행 하면 됨
- 추가 준비 서류
 - 해당 제품 또는 관련 재료의 허용과 효능 입증에 대한 3개국 이상의 논문 자료
 - 모든 성분 중 인니 기준치 초과 사용 재료에 대한 분석증명서
 - 인도네시아 미사용 재료의 경우 임상 시험 보고서
- 주요 사례로는 제품에 보리 순이 들어간 경우 식품 재료로 사용 가능 하나 인니 허용치 5% 초과 사용 시에 인도네시아 기존 식품 재료로 사용 되지 않은 신 재료에 해당 되어 그 안정성 등을 평가 받아야 함
- 유산균 첨가 제품의 경우 인도네시아에서 허용 하고 있는 37개 유산균에 해당 될 경우 에도 사전 평가 받아야 함. 유산균 첨가 제품으로 기능성 식품(SI)이 아닌 일반 가공 식품(ML) 승인 시 제품 라벨 및 디자인 등에 “probiotik” 문구를 사용 할 수 없음



*관련 법령 : Peraturan Kepala Badan POM Nomor 13 Tahun 2016 tentang Pengawasan Klaim pada Label dan Iklan Pangan Olahan

* 통관거부 사례를 업데이트하는 인도네시아 정부기관 웹사이트가 부재하여 현장 사례 및 뉴스로 대체함.

□ 태국, 인도네시아 산 망고스틴 수입금지



- 인도네시아산 망고스틴이 태국에서 수입 금지됨. 태국 농업협동조합부에 따르면 6월 21일부터 인도네시아 산 망고스틴 수입을 금지했다고 밝히며 태국법에서 정한 농식품 및 식물 위생 검역(SPS) 기준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
- 인도네시아는 향후 망고스틴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태국 농업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인도네시아는 7~8월에 태국산 롱간(longan)의 수입을 금지한 바 있어 이에 대한 대항 조치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태국 정부는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2017년 태국에 1억 1,300만 바트(약 38억원) 상당의 망고스틴을 수출했고 올해 1~5월은 3억 6,000만 바트(약 121억원)를 기록하였음

* 출처 : 방콕 포스트 / 2018년 7월 05일